

도시 옥외광고물의 관리에 관한 연구 - 옥외광고물표시제한특정구역 지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city outside advertisement

이난경

광주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Lee, Nan-Kyung

Dept. of Industrial Design, Kwangju Women's University

오승진

광주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Oh, Seung-Jin

Dept. of Industrial Design, Kwangju Women's University

- Key words: City Life, Deign Management, Outside Advertisement

1. 서 론

현대인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삶을 영위한다. 도시에서의 삶은 다양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장점도 있지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많은 공해들과 위험요소도 함께 존재한다. 그 중 옥외광고물로 인한 시각공해와 안전문제는 도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상행위의 과다경쟁성향에 따른 무분별한 광고물설치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건축물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광고물의 종류, 수량, 규격 등이 임의로 제작, 설치됨으로써 도시의 새로운 저해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시민들은 혼란스러운 옥외광고물의 흥수 속에서 질식하고 있고 심각한 시각공해를 만들며 도시의 혐오시설물들이 되어가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도 규제를 하고는 있지만 담당 공무원의 단속 만으론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몇몇 지자체들이 “광고물표시제한”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규제를 함으로서 약간의 성과를 거두고는 있지만 뚜렷한 성공사례를 찾기는 힘들다. 본 연구는 그 동안 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진 “광고물표시제한” 규제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효과를 알아보고 미흡했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여 보다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2. 옥외광고물의 관리 현황

2-1. 광고물표시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

옥외광고물로 인한 공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각 지자체들은 특정구역에 대한 “광고물표시제한”을 고시함으로서 법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주로 새로이 조성된 지구에 대하여 건축물의 시공단계부터 광고물의 설치를 제한하여 쾌적하고 질서 있는 신도심의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시·도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옥외광고물표시제한 특정구역과 시에 관한 법적인 근거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제4조 (광고물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 미관풍치,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고물등의 표시,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12조 (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에서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에 광

고물등의 표시를 금지,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시·도 조례로 정하게 하고 있다. 이법을 근거로 각 시·도에서는 옥외광고물관리조례를 만들어 광고물을 규제하고 있는데 각 시·도의 조례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내용은 거의 같다. 시·도의 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표시를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위원회의 심의후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고시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2-2. 광고물표시제한 사례

현재까지 “광고물표시제한특정구역 고시”의 사례로는 서울시, 인천시, 울산시, 부산시, 김해시, 순천시가 있다. 광고물의 표시에 관한 법령의 기본내용을 살펴본 후 각 시·도의 고시 내용과 비교해 보도록 한다.

[표1]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나타난 광고물의 표시에 관한 내용

구분	조문 내용
관련 법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시·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설치가능 광고물	•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 교통수단이용광고물, 선전탑, 아취광고물 등 16종
총수량	• 총수량 3개 (꼭지점 4개)
가로형 간판 (세로형)	• 3층이하 건물정면에 입체형 가능 • 가로 : 건물폭 이내 • 세로 : 윗층과 아래층 창문간 벽면(창문제외)폭 이내 • 4층이상 당해건물명의 건물상단에 3단 입체형 가능 • 출입구 양측1개 가능(세로형) • 4층이상 건물측면 가로간판 1개 가능 : 세로8m
광고물종 돌출 류별 설치 규격	• 지면과의 간격 3m 이상(인도 없을시 4m이상) • 건물높이 초과금지, 벽면으로부터 1.2m이내 • 세로: 벽면높이 20m이내, 두께 50cm이내 • 2개이상업소 일직선상표시시 건물전면폭 10m마다 1줄추가
지주 이용 간판	• 높이 10m, 1면의 면적 10m ² , 층면적 40m ² 이내 • 건물부지 여건상 1개 균일한 경우 연립형 추가 가능 • 보도경계선으로부터 50cm이상 거리유지
옥상 간판	• 건물 4층이상(상업지역은 티사광고 가능, 군은 3층 이상) • 가로 30cm, 세로 20m, 높이 15m이내 건물높이 2/1 초과금지
창문 광고	•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함

[표2] 각 시·도의 특정지역 표시제한

구분	서울시	인천시	울산시
고시일시	• 1차 2000.10.30 • 2차 2001.4.2	• 2001.8.1	• 2002.3.28(최초) • 2003.4.3(개정)
특정구역	• 163개기로 697km • 25개상가(구별1개)	• 공항시거리 조성 지구 2,754,296m ² • 경인로 0.83km	• 17개기로 72.6km • 성안지구 1,247,098m ²
업소별총 설치수량	• 2개(곡각지점3개) * 서초구 1개	• 2개 (곡각지점3개)	• 2개
광고물 설치제한	• 아취광고물은 원칙적으로 설치금지 • 부분적으로 창문이 옹광고물과 세로형 간판 설치금지	• 세로형간판,돌출간판,옹상간판,애드벌룬, 창문이용광고물,선전탑,아취광고물,현수막, 벽보,전단은 설치금지 • 옥상간판 추가	• 가로형, 돌출, 연립식지주간판, 창문이용광고물로 제한
광고 물종류별 설치 규격	• 3층이하 정면설치 • 가로 : 없음 • 세로 : 창문간 세로폭 50~90%이내	• 1층정면에만 설치 • 가로:건물가로폭내 • 세로 : 창문간 세로폭 80%이내	• 법령대로 설치 (3층이하정면설치 가로:550cm 세로:100cm)
돌출간판	• 세로 : 건물1개층 이내	• 설치금지	• 법령대로 설치(가로:50cm세로:200cm)
지주이 용간판	• 부분적으로 연립형 에 헌하여 설치	• 연립형 헌해설치 • 높이 8m이내 • 폭 3m이내	• 법령대로 설치 (연립형에 헌하여 설치 높이, 폭2m이내)
옥상 간판	• 해당없음	• 설치금지	• 법령대로 설치 (설치금지)
창문 이용 광고	• 부분적으로 설치금지	• 설치금지	• 법령대로 설치 (3층이하창문설치, 창문면적1/4이내)
기타사항	• 광고물은 색상, 형태등은 구에 위임 • 광고를 도안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광고물 심의후 설치 가능 • 자치구별 1km내외 시범구간 지정운영	• 모든 유형의 광고물을 각 업소별 해당된 면적내 표시 • 기급적 개발업소 간판설치 지양 • 색채는 인천광역시 CIP전용색상사용	• 광고물부착지대 및 건물명 광고물 설치권고 • 고시규정 적용이 불합리한 광고들은 광고물심의후 설치가능

구분	부산시	김해시	순천시
고시 일시	• 1차 2003. 1. 9 • 2차 2001. 3. 12 • 3차 2001. 4. 26	• 1차 1996. 4. 9 • 2차 2001. 3. 12 • 3차 2001. 4. 26	• 2004. 3
특정구역	• 센텀시티 지방산업 단지 1,170,367m ²	• 내외신시거리 상업지역 일부 • 북부신도시, 일반 상업지역 97,828m ² • 장유신도시 중심 상업지역 174,294m ²	• 연향 3지구전역 287,057m ²
업소별 총설치 수량	• 2개(곡각 지점3개)	• 1개 (곡각지점2개)	• 2개(곡각지점3개) * 주유소, 가스충전소 1개추가
광고물 설치 제한	• 가로형, 돌출, 연립지주간 판, 창문이용광 고물로 제한	• 세로형간판,돌출간 판,옹상간판,애드벌룬, 창문이용광고물,선전 탑,아취광고물,현수막, 벽보,전단은 설치 금지	• 판류형세로,공연,옥상,현수 막,애드벌룬,벽보,전단,선전탑, 아취광고물,창문이용광고물은 설치금지 • 회면전환,점멸사용불가(단 네온 간판면적 3/10이내가능)
광고물 종류별 설치 규격	• 2층이하 정면설치 • 가로 : 당해업소의 가로폭이내 • 세로 : 90cm이내	• 3층이하 정면설치 • 가로 : 당해업소의 가로폭이내 • 세로 : 100cm이내	• 2층이하 정면설치 • 가로 : 바닥 면적범위내 • 세로 : 위아래층 창문간 벽면높이 이내 • 1층이하 : 판류나 입체형, 2층 : 입체형 • 3층이상 : 입체형(건물면, 상징도형, 건물폭1/2이내) • 주유소, 충전기시설 차양면에 1개설치 가능 • 입체형가로간판 없을시 입체형세로간판 설치

구분	부산시	김해시	순천시
광고물 종류별 설치	돌출 간판	• 가로 : 70cm이내 • 세로 : 200cm설치	• 가로 : 벽체로부터 1m 이내 • 사용층수 이내크기로 표시 • 2개이상업소 표시시 일직선상 표시(게시시설) • 동일층수 2개 이상 표시 경우는 면적비율 분할표시
지주 이용 간판		• 건물5층이 상 업소수가 10개이상	• 연립형에 헌해설치 • 높이 4m이내 • 폭 2m이내 • 세로: 4m이내, 가로 5m이내
옥상 간판		• 설치금지	• 종합병원과 관광호텔에 헌하여 허용
창문		• 설치금지	• 설치금지
기타 사항		• 도시미관 특례규정	• 순천시 디규정의 한글상호나 마스크트등 사용권장 •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특례작용 • 업소간 광고물표시 분쟁시 분쟁조정 심의운영

3. 광고물표시제한 사례분석 및 개선방향

광고물표시제한고시 사례를 살펴본 결과

- 총수량이 현행법 3개에서 1~2개로 줄었으며 • 설치가능 광고물도 현행 16종에서 4~6종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 가로형광고는 기존설치기준 3층에서 1~2층로 조정되었으며
- 돌출광고는 크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준이 바뀌었고 • 지주광고는 연립형을 권장하고 있으며 • 옥상광고는 제한 적으로 허용하고 • 창문광고는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그러나 광고물의 수량제한과 더불어 현재 미흡한 광고물들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표시위치 또는 장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상 살펴본 것처럼 표시제한특정구역고시가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 하겠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갯수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도시 이미지를 고려한 옥외광고물의 구체적인 규제이다. 크기와 색상, 모양, 제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통일감 있고 개성있는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디자인적인 측면에서의 '광고물표시제한'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이 성공하려면 건물주와 건축사, 광고물제작자와 관리를 담당한 공무원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정민, 조현신, 한국 사인디자인의 정책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2003
- 신정철,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가로간판 정비방안 연구, SIGNS IN KOREA 84호, 2003
-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 해설, 전라남도